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1.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5호에 의거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투신신탁의 해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하여야함.

2. 대상 펀드

운용사	펀드명	설정일	발생일자	수시공시일자
대신	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자 제1호 [주식-재간접형] Class A	2007/08/01	2013/08/25	2013/08/26
슈로더	슈로더 글로벌에너지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Class A	2009/10/06	2013/08/05	2013/08/08
	슈로더 글로벌에너지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Class C1			
	슈로더 글로벌에너지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Class C2			
	슈로더 글로벌에너지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Class C3			
	슈로더 글로벌에너지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Class C4			
슈로더	슈로더 미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Class A	2009/10/06	2013/08/28	2013/08/29
	슈로더 미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Class C1			
	슈로더 미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Class C2			
	슈로더 미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Class C3			
	슈로더 미국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Class C4			
이스트스프링	이스트스프링글로벌인프라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2007/08/28	2013/08/14	2013/08/16
프랭클린템플턴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05/12/05	2013/08/27	2013/08/28
JP모간	JP모간G2증권자투자신탁(주식) Class A	2010/05/11	2013/08/12	2013/08/12
	JP모간G2증권자투자신탁(주식) Class C1			
	JP모간G2증권자투자신탁(주식) Class C2			
	JP모간G2증권자투자신탁(주식) Class C3			
	JP모간G2증권자투자신탁(주식) Class C4			
하나UBS	하나UBS 덤섬 증권투자신탁(채권)Class C	2011/02/07	2013/08/11	2013/07/12
하나UBS	하나UBS 슈퍼아시아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Class A	2010/11/01	2013/08/26	2013/08/27
	하나UBS 슈퍼아시아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Class C	2010/11/04		

하나UBS	하나UBS120/20증권투자신탁(주식)Class A	2009/09/07	2013/08/05	2013/08/06
	하나UBS120/20증권투자신탁(주식)Class C1			
	하나UBS120/20증권투자신탁(주식)Class C2	2010/09/06		
	하나UBS120/20증권투자신탁(주식)Class C3			
	하나UBS120/20증권투자신탁(주식)Class C4			

3.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내용

- 상기의 집합투자기구는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임.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음.
- 처리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